
2024년도 제72회 교육공로자 표창요강

2024 3.


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

I 목적

-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 진작 도모
-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기대
-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
- 교직윤리 실천의 확산

II 기본방침

- 표창 후보자는 교육계에 헌신하고 교직윤리의 실천에 모범이 되는 자를 추천한다.
- 표창 후보자의 추천자는 시·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한다.
- 표창 후보자의 공적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며 표창 종류별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- 표창 대상자의 선정은 본회 교육공로자표창규정에 의거,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.
- 표창식은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한다.

III 표창계획

1. 표창식

가. 행사명 : 『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』

나. 일자 : 2024. 5. 중순 예정

다. 장소 : 미정

2. 표창종류

가. 특별공로상 (한국교총과 세종교총의 심사 기준은 다를수 있음)

※ 한국교총 특별공로상 선정 기준

: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

- 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① 교과지도 | ② 생활지도 |
| ③ 특별활동지도 | ④ 특수교육 |
| ⑤ 도서벽지교육 | ⑥ 학교운영 |
| ⑦ 교원단체활동 | ⑧ 기 타 |

※ 세종교총 특별공로상 후보자 선정 심사 기준

- ① 교육경력
- ② 교총 기여도(교원 단체 활동, 신규 회원 추천 등)
- ③ 교총 가입기간
- ④ 공적 조서

나. 교육공로상

-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2024. 8. 31.(단, 2024. 2. 29. 퇴직자는 퇴직일) 기준 교직경력 32년 이상(군 경력 포함) 교육계에 근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다. 교육가족상

- 본회 회원으로서 직계가족(직계 존·비속 및 그 배우자) 및 형제자매가 5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

라. 독지상

- 본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소속단체가 아닌 단체로서,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

마. 교육명가

- 본회 회원으로서 3대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가문

3. 표창인원 및 내용

구 분	인 원	상 훈 자	비 고
특별공로상	전체 36명 이내 (세종교총 2명)	회 장	한국교총 및 시·도교총 현직 임원, 시·군·구교총 현직 회장 제외
교육공로상	해당자 전원	회 장	
교육가족상	해당 가족 전원	회 장	
독 지 상	전체 17명 이내	회 장	
교 육 명 가	해당 가문 전원	회 장	

4. 표창 후보자 추천 절차

학교분회 ➡ (시·군·구교원총연합회) ➡ 시·도교원단체총연합회 ➡ 본회

5. 추천 시 유의사항

- 가. 과거 본회로부터 특별공로상, 교육공로상, 교육가족상, 독지상, 교육명가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동일 추천 훈격 대상에서 제외
- 나.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,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 기준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결격사유 자는 대상에서 제외
 - ※ 교육가족상, 교육명가 후보자 추천시 가족 구성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가족 수에서 제외
- 다. 교육공로상 대상자의 교직기간(군경력 포함) 산정기준은 2024. 8. 31. 현재로 하되, 2024. 2월 말 퇴직자와 전년도 퇴직한 대상자 중 누락자는 퇴직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
- 라.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반드시 소속학교(기관) 인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
- 마. 본회에서 수상자를 확정·통보할 때까지는 표창 후보자의 추천내용을 본인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
- 바. 교육공로자 표창 후보자 추천 후 인적사항(소속 및 직위)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본회 조직강화국(02-570-5543)으로 통보
- 사. 표창종류별 추천서와 공적조서는 후미에 첨부된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·제출
 - ※ 표창요강과 추천서 및 공적서 서식은 한국교총 홈페이지(www.kfta.or.kr)에 탑재

6. 표창종류별 추천서 및 공적조서 : 별첨(서식 1호~서식 9호) 참조

7. 표창 대상 선정 :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

8. 표창종류별 제출서류

- 가. 교육공로상 : 공적조서 1부(서식 제4호)
- 나. 특별공로상
 - (1) 추천서 1부(서식 제1호)
 - (2) 공적조서 1부(서식 제5호)
 - (3)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(인사담당관 확인필)
 - (4) 명함판 사진 1매(사진 파일로 대체 가능)
 - (5)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(서식 제5-1호)
- 다. 교육가족상
 - (1) 추천서 1부(서식 제2호)

- (2) 공적조서 각 1부(서식 제6호, 서식 제6-2호)
- (3) 교육가족 각자의 재직(경력)증명서 1부
단, 가족대표는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(인사담당관 확인필) 제출
- (4) 교육가족 가족관계증명서 1통
- (5) 가족사진 2매(사진 파일로 대체 가능/고해상 요망)
- (6) 개인별 명함판 사진 각 1매
- (7) 교육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(서식 제6-1호, 서식 제6-3호)

라. 독지상

- (1) 추천서 1부(서식 제3호)
- (2) 공적조서 1부(서식 제7호)
- (3) 명함판 사진 1매(사진 파일로 대체 가능)
- (4)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(서식 제7-1호)

마. 교육명가

- (1) 공적조서 각 1부(서식 제8호, 서식 제8-3호)
- (2) 특이사항 ‘교육명가의 특별한 교육사랑 이야기’ 1부(서식 제8-1호)
- (3) 교육가족 각자의 재직(경력)증명서 1부
단, 가족대표는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(인사담당관 확인필) 제출
- (4) 교육가족 가족관계증명서 1통
- (5) 가족사진 2매(사진 파일로 대체 가능/고해상 요망)
- (6) 개인별 명함판 사진 각 1매(사진 파일로 대체 가능)
- (7) 교육명가 구성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(서식 제8-2호, 서식 제8-4호)

9. 제출처 및 제출기한 : 세종교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